

■ 교육

대학 진학,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

미국 대학들은 학사 관리가 엄격하다. 입학 을 했다고 자동으로 졸 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정 기준 이 상의 내신(GPA)를 받지 못하면 학사 징계를 받 고 끝내 학사 제적을 당 할 수 있다.



이 상황의 학생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부족한 학점을 수강하고 오면 된다. 대학은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1년을 그냥 쉬고 다시 도전을 한다. 대부분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워한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여기서 별다른 대책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은 학사 제적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맞는다. 즉 다시 돌아가서 어느 학기이건 다시 2.0 미만의 학점을 취득하면 대학은 예외 없이 학사 제적처리에 들어간다.

대학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대학은 징계 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 여부를 결정하나 거의 모두 제적 처리가 된다. 이 상황에 이르면 국제학생은 3주 이내에 즉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대학에 재입학이 어려워진다. 규정 상 신입도 안 된다.

■ 명문대 합격만이 능사 아냐,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합격을 하고 이후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해야 레이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희망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 입학해서 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를 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 불가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적 문제도 조기에 파악을 해 대처를 하면 학사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 한 학기 성적 1.5 미만이면 학사 제적

에듀진(edujin.co.kr)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들은 한 학기 성적이 1.5 미만이면 다른 예고 없이 곧바로 학사 제적 처리를 한다. UCLA를 비롯해 많은 미국 대학들의 학사 경고 규정을 보면 “한 학기 학점이 1.5 미만이면 제적처리 한다” 라고 돼 있다. 1-4학년 가운데 어느 한 학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곧바로 제적된다.

그러나 학생이 어느 학년, 어느 학기 건 학점이 2.0 미만이 나오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학사 주의(Academic Warning)을 준다. 그 다음 어떤 학기이건 다시 2.0 이하 학점을 받으면 학사 경고(Academic Probation)가 나갈 것이라는 예고다.

이 단계에서 대학 카운슬러는 해당 학생을 부른다. 카운슬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카운슬러를 만나지 않는다. 두렵고 창피하기 때문이다.

다시 어떤 학기이건 또다시 2.0 미만 학점을 받으면 그 학생은 대학으로부터 학사 경고(Academic Probation)을 받는다. 이 상태에 이르면 대학은 보통 해당 학생에게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 즉 유기 정학 조치다.

■ 법률 칼럼

직장(학교)에서 해고(제적)된 경우,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서 직장이나 학교를 바꾸는 경우라면, 진로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명목으로 회사에서 자기 책상이 사라지거나, 예기치 않은 일에 휘말려 학교에서 제적처리가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취업이나 학업을 통해서 비민 신분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해고나 제적 통보를 받은 후부터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민 비자 중 취업비자 일부(O비자, L비자, R비자)와 투자비자(E비자)는 비민 비자의 근거가 되는 취업과 투자가 중단되는 즉시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F1과 OPT, 교환방문비자인 J1, 또 취업비자 중 H-1B는 체류신분 만료 후에 미국을 여행하며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락된 Grace Period (F1, OPT와 H-1B의 경우 60일, J1의 경우 30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당하거나 투자를 그만둔 날의 다음날 또는 Grace period의 61일째/31일째부터 불법체류일수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즉시 체류신분이 상실되는 비자들의 경우에 비록 법적으로 허락된 Grace Period는 없더라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을 준비하는데 드는 적당한 시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이를 이민국이나 미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시간’이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을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입국이 허가 되지 않는 unlawful presence bar가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부터 해당되는 조항 때문에, 체류 신분 없이도 6개월 미만까지는 체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3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는 unlawful presence bar에 해당은 안되겠지만, 후에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할 때, 이 불법체류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사의 재량에 의해서 비자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